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을 위한 용자 근거 마련〉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33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을 위한 용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31일 최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은 증액이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자금 활용 시기에 있어 탄력성이 부족하므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을 위한 융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생략)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u>지원</u> 할 수 있다.	② ----- ----- ----- ----- ----- ----- ----- <u>지원</u> 또는 <u>융자</u>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위 등에	③ ----- ----- ----- <u>지급과 비용의 지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 및 융자금의 지급·상환 방법-----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은 증액이 어려우므로 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지원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출연금이란 행정주체가 출연 대상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의미함.

- 이에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외에 ‘융자’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기관 등의 책임성과 정부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임.

- 융자금이란 국가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공자금을 특정 대상에게 융자하는 금전급부를 의미하는데, 출연금과 비교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 환수된 자금을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¹⁾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출연 방식에 기반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투·융자 연계 방식으로 다양화하도록 제시한 바 있는데,²⁾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융자 방식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여짐.

[표] 해양수산부 R&D 사업 수행기관 비율

수행기관	'18	'19	'20	'21	'22
국립연구소	20.2	20.2	19.5	18.3	17.5
출연연구소	56.6	56.5	51.5	47.0	48.6
대학	10.2	9.1	8.4	10.4	9.9
대기업	0.3	0.4	1.2	0.4	0.5
중견기업	0.1	0.3	0.8	0.7	0.5
중소기업	10.3	11.0	14.8	18.7	19.0
기타	2.3	2.6	3.8	4.6	4.1
총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KISTEP)

1) 진영현,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통권 제262호), 2019.5, p17

2) 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Ⅱ, 2024.5, p327

□ 이와 관련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정부 R&D 예산 삭감이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과 열악한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³⁾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8

3) 해양수산 기업은 166,554개이며 중소기업 비율이 98.9%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며, 해양수산 R&D에 참여하는 기업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18) 10.7% → ('22) 20.0%로), 출처: KMI, KISTEP